

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
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합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 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「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·지역 등 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으로 변경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과

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을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33조제2항).

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”를 “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·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-----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